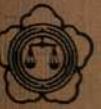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CPc.d.12

CPc.d.12



토론회 결과 보고서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일 시 : 2000. 11. 13.(월) 16 : 00

장 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장(지하 1층)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결과 보고서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일 시 : 2000. 11. 13.(월) 16:00

장 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장(지하 1층)

大韓辯護士協會

大韓民國 著作権법 修訂案

00-05 (2000. 11. 00) 11월

(中) 次回(次回) 次回(次回) 소정

大韓民國 著作権法

차례

■ 협회장인사 ----- 5

■ 주제발표 -----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I.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 ----- 7

II. 집단소송법제정과 관련된 동향 ----- 11

III. 집단소송법제정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 ----- 12

IV. 집단소송법의 입법방향 ----- 13

【자료 1】 집단소송법과 기존 민사소송 사이의 특징비교 ----- 16

【자료 2】 집단소송법안(연대회의 입법청원안) ----- 16

■ 지정토론 ----- 33

■ 참가자 -----

사회 : 김 광 년 대한변협 법제이사

주제발표 : 이 용 철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지정토론 : 이 종 걸 의원(민주당 제2정책조정부위원장)

이 건 호 변호사

윤 님 근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 규 상 성균관대 법대 교수

신 종 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부록 ----- 67

1996년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집단소송법시안

협회장 인사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젊은 변호사 몇 분이 인터넷에 이런 광고를 띄웠습니다. “대우가 그 동안 엄청난 분식결산을 해왔고, 그 때문에 선의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값싼 비용으로 소송을 해줄테니까 연락하라”는 류의 광고를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 분들은,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젊은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된 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저희 자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곡동 주민들이 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을 주관하였던 단체들이 원고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또는 지하철운행지연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거리에 나가 캠페인도 벌여 원고 모집을 하는 등의 일이 요즘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제도적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소송제에 대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96년부터 법무부에서 연구하고 시안까지 마련한 바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입법예고까지 되었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었고, 현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일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소송제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도입에 관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를 변협이 조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법에 의해 올해 8월부터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소송이 이루어지면 저희 변호사들이 관여하겠지만, 공익활동이나 공익소송에서는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매우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집단소송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특히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발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용철 변호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정규상 성대 교수님, 윤남근 서울고법 판사님, 이건호 변호사님, 신종원 YMCA부장님, 그리고 이종걸 국회의원님께 모두 감사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1.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창국

○ 김광년(사회) :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대로 집단소송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장시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때 과연 이 시점이 바른 시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찬반의 논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어차피 민사소송의 한 분야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또 기존의 민사소송법의 법리와는 다른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접근되고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적격의 문제, 심리방식의 문제, 입증책임의 문제, 손해배상방법의 문제, 권리실행으로 인한 금전분배 등 강제집행상의 문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책,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법원의 후견적 역할 등이 논의의 대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안이 있고, 또 시민단체가 마련한 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변협이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고 시의적절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은 먼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변호사님께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변호사 이용철

I.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

가. 기업활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그 보완책의 도입필요성

(1) 수익성 확보를 절대적 목표로 하는 현대의 기업활동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구성원인 투자자, 근로자 등과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자, 소비자, 환경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특히, 독점적인 대기업이 출현하여 국가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현대경제체제에서는 근로자, 투자자, 소비자, 환경피해자들의 규모도 대량화하여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운영체계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진다.

(2) 유럽의 대륙법체계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법 등을 제정하여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의 활동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각종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스스로 규제하게 된다.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인근주민들은 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적인 규제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피해를 벗어날 수 있다.

(3)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최소한도에 머물게 되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활동에 따른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지는 않고 있는데, 기업활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견제하는 보완시스템이 바로 집단소송법이다. 다수의 피해집단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결과의 혜택을 받게 되고 기업이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기업이 파산하는 예가 많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인근주민에 피해를 입힐 경우 곧바로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집단을 고려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기업의 운영 등의 기업활동에서 많은 사전적인 배려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위 집단은 보호되는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식의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운영체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회모델로 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논리가 지배적이 되었다.

미국식의 국가운영모델을 지향하여 경제시스템과 법률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따라서 행정적 규제 또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에서는 이전에 행정적 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받아 온 투자자, 소비자, 근로자, 인근주민들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 당연한 만큼 이러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시스템이라도 강화해야 경제활동의 자유의 극대화의 반작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완시스템인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필요가 절실하다.

나.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

(1)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문제, 환경문제,

근로자문제 등이 소송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쟁에서 개인들은 그 피해의 정도가 작고 흩어져 있는 반면, 소송비용의 부담,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막강한 자금력·정보력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다툼 자체를 포기하게 되며, 실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우월적 집단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승소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혹 어느 개인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개별적 권리주장' 내지는 '개별적 소송의 제기'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절차법의 법리에 따라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3)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기업이 구성원인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 기업활동의 관계인인 소비자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각종의 피해, 정부나 관료기구의 전횡이 가져오는 일반시민의 대량적 피해 등 각종의 소액다수의 피해 및 집단이익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사법적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따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피해자, 권리자들을 모아 하나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와 가해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소송 자체가 항상 공익소송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공익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생활양식의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대량생산, 대량소비, 주거공간의 공동화(공동주택 거주자가 전국민의 과반수를 넘어서 있음) 등 생활양식의 대량화와 공동화를 특징으로 할 뿐 아니라, 최근의 의약분업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듯 이익집단의 거대화,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거대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주의적인 분쟁해결이 불가능해지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분쟁의 종식과 제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대규모의 불법행

위에 대해서는 무력한 사법적 통제 시스템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거대규모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효력을 갖는 사법시스템은 국가체제의 유지와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비자 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근로자, 소액투자자들과 대기업집단간의 현대형 소송에서 소비자, 환경피해주민, 근로자,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

(1) 19세기의 시민법적 원리에 입각한 민사소송법의 원리는 소송의 양당사자가 대등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으나, 위와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는 대기업집단 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고, 대기업집단이 분쟁의 내용을 이루는 사안의 전문성에 있어 상대방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어 시민법적 원리에 입각한 일반 민사 소송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소비자, 근로자, 주민, 소액투자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 주민, 근로자, 소액투자자들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이러한 소송상의 불균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간접반증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원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도 통계적 입증, 표본적 입증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을 개연성·상당성이 있는 정도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

(1) 이미 선진 제국에서는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어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소비자, 주민, 근로자,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적인 실험, 연구, 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 하지만, 이렇게 기업 외부의 소비자, 주민, 근로자나 기업내부의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나 이익을 고려하면서 하는 경영활동에 익숙하여 있는 외국 기업에 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세계시장의 경쟁에 뒤쳐지는 상황이다.

(3) 국내시장에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위와 같은 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기 위하여는 집단소송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II. 집단소송법제정과 관련된 동향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여왔다. 정부에서도 지난 96년 법무부 산하에 민사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소송법시안을 만들고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IMF 구제금융 당시 세계은행이 투자보호를 위해 차관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관계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언한 이래 증권거래 분야에 한정한 집단소송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고, 금년 정기국회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민, 소비자, 환경피해자 등의 공동이익을 대변하여 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이를 공동이익을 사법시스템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갈망하여 오던 중 금년 9월초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참여연대와 서울YMCA를 공동사무국으로 정하여 참여단체가 속속 늘고 있으며, 법무부 시안을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10. 11.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본 발제자도 위 연대회의에 참여하여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따라서 앞서 지적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이어서 발표할 입법방향 모두 위 연대회의의 공동의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III. 집단소송법제정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

가.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제도에 위배된다는 주장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이 민사 소송법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이 무차별적인 대상이 아닌, 일정한 집단의 범주를 형성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결효력이 미치게 되어 법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역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판결효력이 확장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법원에 미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주장

이 법의 제정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국인투자자 등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집단소송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여 경영활동이 견제받는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선진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집단이익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은 무한정 미룰 과제가 아니다.

다.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기업활동의 투명성·정직성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소비자보호, 투자자보호, 노동자권익, 지역주민의 권익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하고 이윤추구만을 우선시 하는 발상일 뿐이다.

라. 소송의 남발이 우려된다는 주장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원에 의해 사전에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없으며 지나친 기우이다.

마. 타국의 입법례 및 성공례가 많지 않다는 주장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경영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면, 그 견제수단 또는 보완체계로서 집단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율과 견제에 의해 균형적 사회체계를 만드는 전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차원에서 대표당사자소송제도(Class Action)를 두어 기업활동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사후적 통제를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단체소송제도, 제조물책임법 등을 통해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IV. 집단소송법의 입법방향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가 입법청원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집단소송법의 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 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표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미국식의 Class Action)

(1)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는 소의 제기와 동시에 총원의 범위, 대표당사자의 경력, 대표단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 등,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당해 사건의 성격상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를 선정. 즉 구성원이 상당한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한다.

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에 당사자 적격을 부여(독일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고, 대표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공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선정한다.

라. 소송비용의 특례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한 절차

(1) 법원이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적절히 주지시켜야 하고, 총원 중 집단소송으로부터 제외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바. 소송절차상에서 주장·입증의 정도 및 방법에 있어서의 특칙

소송절차에서는 개략적 주장, 석명의 특칙, 직권증거조사 등의 특칙, 당사자신문의 특칙, 문서제출명령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의 특칙, 통계적·표본적 방식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특칙이 적용된다.

사. 강제집행방법의 특칙

(1)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사무를 행한다.

(2)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고,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잔여금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이를 공탁한다.

아. 대표당사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1】 집단소송법과 기존민사소송 사이의 특징비교

구 분	민사소송법	집단소송법
원고적격	피해당사자에 의한 소송제기 선정당사자제도	동일범주 피해자 전원 대표당사자 선정 제외신고를 한 동일범주 피해자는 제외함.
기판력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침.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아니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판결효력이 미침.
입증책임	소송 원고 - 피해자측의 입증 구체적 입증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개괄적 입증
손해액입증정도	개별적 · 구체적 입증	표본적 · 통계적 입증
강제집행	당사자에 의한 강제집행	법원 감독 하의 분배관리인에 의한 집행

【자료 2】 집단소송법안(연대회의 입법청원안)

◆ 주요골자

-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 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소송대리인은 집단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 다.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대표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공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선정(안 제10조).
- 라.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안 제11조).

- 마.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제2항).
- 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제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구성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음(안 제19조).
-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의 허가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안 제20조).
-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차.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 · 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 ·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설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안 제30조).
-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

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 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안 제36조).

거.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안 제38조).

너.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더.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 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1조).

러.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1조).

머. 제62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 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2조).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의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라 함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 전원을 말한다.
2.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라 함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기타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4. “대표단체”라 함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기타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대표자”라 함은 대표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제외신고”라 함은 구성원이 집단소송의 기관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법원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집단소송”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제 3 조(법적용례) ①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② 소제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관할)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 5 조(소송대리인)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단체나 대표당사자에게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 6 조(소의 제기 및 허가신청등) ①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제기시 납입하여야 할 인지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소송목적가액의 기준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 7 조(소장 기재사항의 특칙)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대리인 및 총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대표당사자의 경력, 대표단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 소송대리인의 경력. 다만 제10조 제2호의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 9 조(법원의 허가)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대표당사자, 대표단체,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건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제10조(대표당사자, 대표단체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 집단소송을 해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와 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자는 대표당사자에서 제외한다.

1.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
2. 대표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일 것.
 - 가. 정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과 활동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
 - 나.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의 지역적 활동범위가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전역에 미칠 것.
 - 다.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의 인적 구성 및 활동목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
 - 라.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의 목적으로 지지하는 모든 자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을 것.
3.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일 것.

제11조(소송사건에 대한 허가요건등) ① 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이 상당한 다수일 것
2.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제12조(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허가신청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집단소송의 허부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합허가신청의 처리) ① 동일분쟁에 관한 수 개의 집단소송의 허가신청이 동일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

심리할 수 있다.

② 동일분쟁에 관한 수 개의 집단소송의 허가신청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허가결정) ①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

2. 주문

3. 이유

4.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6. 관할법원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5조(소송비용) ①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서 고지비용 기타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불허가결정등)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집단소송은 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구성원의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제17조(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총원의 범위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5.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6.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판결등의 효력이 미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동대표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

7.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의 고지는 법원이 일간신문제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은 중앙일간지 2곳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복수의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구성원등의 소송관여) ① 구성원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대표당사자 또는 공동대표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허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대한 소송수행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대한 소송수행의 허가를 결정으로 취

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1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사임)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일부변경)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소송수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23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전부변경)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소송수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5조(소송대리인의 사임등) ①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의 일부가 사망·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후 1년 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총원범위의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변경결정으로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그 변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개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외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송절차

제28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29조(석명 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28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직권증거조사등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31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을 포함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를 신문할 수 있다.

제32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6조(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①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단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화해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기간을 정하여 구성원에게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데 있어 총원 전체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판결서의 기재사항등) ① 판결에는 소송대리인, 총원의 범위 및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유예기간을 허락할 수 있고, 분할지급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기판력)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9조(재심)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임·직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구성원들의 권리를 사해하는 소송수행을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분배절차

제40조(분배법원) 이 장에 규정하는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1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채무명의를 취득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권리실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배받을 구성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채무명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6조제1항에 의한 공체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기간,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분배의 기준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증의 판단, 화해조서 또는 인 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②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한다.

제46조(분배제외 비용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등을 공체할 수 있다.

1.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단 변호사보수는 채무명의 표시금액의 5%를 넘지 못한다.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

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에 충당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비용부족의 특칙) ① 권리실행한 금액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비용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한 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46조 제1항 각호의 비용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9조(분배계획의 공고) ① 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함께 인가의 요지 및 권리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채무명의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제46조제1항 각호 사항의 요지

② 제1항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1조의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53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4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자의 주소·성명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잔여금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8조의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날부터 6월 내에 한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에 분배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분배금액, 분배금의 지급총액, 잔여금의 처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제3항의 규정은 분배종료보고서에 준용한다.

제5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8조(분배관리인의 면책) 분배관리인의 책임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권리의 실행으로 금전 이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분배) ① 금전 이외의 물건의 분배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0조(추가분배) 분배종료보고서의 제출 후에 새로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별 칙

제61조(배임수재등) ①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임·직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게기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2조(배임증재등) ① 제61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63조(몰수·추징) 제61조 및 제62조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감정의 목적물이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65조(감치명령) 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범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시행규칙

제66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토론

토 론 자

- | | |
|--------|--------------------|
| ■ 윤 남근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정 규상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 ■ 이 건호 | 변호사 |
| ■ 신 종원 |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 ■ 이 종걸 | 의원(민주당 제2정책조정부위원장) |

○ 김광년(사회) : 지금까지 이용철 변호사님의 주제발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서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바로 이 때다'라고 하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윤남근 판사께서 지정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윤남근 : 저는 먼저 미국의 class ac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class action은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혹은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형태로서 연방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ntitrust, 증권거래, 환경문제, 인종 및 성차별에 관한 문제, 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1990년대 제조물책임 및 의약품피해에 관한 소송에 이용되었습니다.

class action의 증가는 1966년 Federal Rule 23의 개정을 가져 오고 실체법의 원칙도 변화를 가져왔으나 법원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Frankenstein Monster"라는 말은 class action이 법원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인가를 응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의 피해를 본 자가 대량집단적인 경우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class action에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법원의 권한은 무엇이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많은 제안이 있었고 법 개정 시안도 나와 있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묘안은 아직 없습니다.

class action은 영국의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에서 유래합니다. 미국에서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기 전에는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가 1938년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3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true class action, hybrid class action, spurious

class action 등 세 가지 유형의 class action이 있었는데, true class action은 권리가 동일하거나 공통된 경우, 본래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들의 2차적인 권리행사, 예컨대 주주들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hybrid class action은 소송의 목적물이나 기금이 동일하고 class의 구성원이 각각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인 경우, 예컨대 유전의 공동소유자가 시추회사를 상대로 royalty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기관력은 당사자로 기재된 자에게만 미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spurious class action은 사실상 법률상의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은 현실적으로 출소한 당사자만 구속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단순한 공동소송에 불과하였습니다.

위 Rule 23은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966년 Rule 23을 전면 개정하여 위와 같은 분류를 없애고 법원에 많은 재량권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각 주 역시 위 Rule 23과 같은 혹은 이를 수정한 class action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있어서 소송물과 관련한 class action의 요건[Rule 23(a)]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lass의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class를 구체적인 성명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의 개인이 class에 속하는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class의 대표성입니다. class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들이 흑인에게는 집을 팔지 않기로 한 그들 사이의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백인은 흑인을 대표할 수 없고(백인이 흑인을 위한 인권운동가라고 하더라도), 항공사 여승무원조합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한 여승무원들을 대표하여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해고당한 여승무원의 복직은 기존의 승무원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므로). 노조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class의 구성원

이 그 비법인사단에 속해 있고, 그 사단의 설립목적이 바로 당해 소송으로 구제하려는 권리의 보호에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세번째로, 다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소송의 복잡성, 청구금액(청구금액이 적을수록 class action에 적합함), class 구성원들의 지역적 분포성(지역적 분포가 넓어 개인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수록 class action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원이 출생, 사망, 퇴직 등으로 변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법률적·사실적 쟁점의 공통성 요건입니다. 즉, 개별적 사건으로 class의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일관된 방침이나 정책의 결과인 때에는 class action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청구의 전형성(typicality)으로서, class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들과 소송으로 추구하려는 청구의 목적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더 이상 class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멕시코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자는 같은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한 멕시코인들을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대표의 적합성입니다. class의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class의 구성원 중 소송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은 연방법에 있어서 class action에 대한 정당성의 요건[Rule 23(b)]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lass action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3가지 이유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①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게 모순되는 행동의 준칙을 요구하게 되거나 특정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예컨대 동일한 입장에 있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과

세처분의 무효를 소구하는 경우, 혹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배당률을 높일 것을 소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② 선언적·침해방지적 판결이 class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 예컨대 특정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정 법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 등이 그 예입니다. ③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쟁점의 공통성과 class action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각 주에 있어서 class action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의 class action에 관한 입법은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① 1938년의 Federal Rule 23을 모델로 하는 주, ② 1966년의 Federal Rule 23을 모델로 하는 주, ③ 연방법을 모델로 하면서도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California 주 등, ④ North Dakota 주처럼 연방법의 경험을 기초로 통지, 비용, 구제방법 등에서 독자적이고 진보적인 접근을 하는 주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Verbandsklag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 특별히 단체에게 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는 이해를 같이 하는 다수자가 대표자를 통하여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공익적 단체에 소권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단체소송은 단체의 고유한 권리에 의한 소송이라는 견해와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를 소송상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법정소송 담당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단체의 이름으로 위법행위의 유지와 철회청구를 소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주 등의 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단체에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을 수행할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 사익적 단체소송, 즉 피해를 당한 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익적 단체소송만이 허용되고 있

습니다(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1997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71면).

다음은 청원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안은 어떠한 경우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요건이 불명확합니다. 이는 자칫 집단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이용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그 준비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불분명할 경우 집단소송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제소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요건불비로 각하되는 때에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선정당사자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미국과 달리 국토 면적이 좁으므로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지리적 이유로 집단소송이 정당화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미국의 class action보다는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소송수행권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class action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제도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회단체에 소송수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특별법에서 그 특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청구의 범위도 위법행위의 유지나 철회와 같이 공익적인 것에 한정됩니다. 결국 독일은 사회단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데 불과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소송제도는 없는 셈입니다.

사회단체에 소송수행권을 주는 경우 오직 소송대행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공익적 목적을 빙자하여 결성되는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조 주변의 브로커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법은 변호사 이

외의 자에 의한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사회단체인지 여부를 심사하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속성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 범인지 선언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임무인데다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전국적 범위의 단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10,000명 이상일 것과 과거 1년간 소비자들의 공익을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비납부를 회원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거리에서 단체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가입서명을 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개인의 재산적 권리행사까지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부패하기 쉬울 뿐 아니라 사회단체의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회원도 아닌 일반인의 개인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회단체에 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 효용성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결국 사회단체가 하는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그 집단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마당에 극빈자의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끼어 들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집단의 대표자나 구성원이 모두 극빈자여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라 법률구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민사소송체계에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법조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한 건의 집단소송의 처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수십 건의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업무량과 맞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법원에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다른 사건의 처리에 무리가 따르거나 지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집단소송에 관한 법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조문 하나 하나가 갖는 법적·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졸속입법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그 요건이나 배상액을 유형화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액의 피해자가 대량·집단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큰 증권거래에 관련한 소송에서 시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시법을 만들고, 3년 내지 5년간 이를 시행해 본 다음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풍토가 비슷하면서도 우리 보다 법제도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일본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아직 논의의 단계에 있는 사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혹은 언론의 힘을 빌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내용의 picket을 들고 있는 시위대로 인하여, 혹은 고성능 스피커로 법원건물을 향하여 구호를 외쳐대는 바람에 법관이 차분히 기록을 검토하는 것조차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대량의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집단소송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경험이 참고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입법례라고 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class action이나 독일의 Verbandsklage는 그 국가별로 통일된 법체계 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각기 고유한 전통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독일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미국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우수한 법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 반대로 최악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는 선진국의 법제도를 고루 받아들인다는 것이 법 자체의 모순저촉과 맹점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원안이 미국의 class action과 같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떠면서도 독일의 Verbandsklage와 같이 사회단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다가 독일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권능까지 사회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집단소송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class action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안은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자력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적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익적 소송에도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행사에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일반 소송의 당사자와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집단소송에서 소구하는 것이 금전의 배상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에서 무상수리를 명하거나 할인 쿠폰을 수여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 김광년(사회) :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집단소송절차를 입법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또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의 class action과 독일식의 Verbandsklage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일부 문제점도 검토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청원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도가 가져 올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한시적·시험적으로 우선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class action의 장점, Verbandsklage의 장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풍토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판례가 충분히 축적된 미국식 class action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의 정규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정규상 : 우선, 집단소송법제정의 입법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자 각 개인의 피해가 경미한데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각 피해자가 개별소송을 제기하여 실손해전보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오직 실손해전보라는 개별적인 민사소송에만 맡긴다든지 방치하여 둔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량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해 회사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집단으로 공동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각 개인의 배상액은 소액이 아니라, 피해자수가 전국에 걸쳐 다수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실손해전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 다수의 생명침해 또는 신체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만으로는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야말로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입법자들이 입법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현대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보호에 터 잡은 민사법 체계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청구권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일지라도 피해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개개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너무 경미하거나 손해액은 다액이나 피해자의 수가 현저한 다수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소송수행방식에 의한 구제를 받

기가 실제로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의 개별적 전보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집단소송에 의한 구제를 하여주는 것이 훨씬 실효적인 것 이 아닐까 합니다. 나아가 집단소송의 이러한 기능은 법원이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형벌을 선고하는 것처럼 집단소송의 신청으로 법원이 윤리위반자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집단소송의 역할이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을 소추하는 것이 검사인 것입니다. 즉,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측이 승소하게 되면 분배절차에 의하여 손해액을 배당받게 되나 가해 기업측으로서는 신용파탄을 맞게 되어 곧바로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가해 기업이 다수자에 의한 집단소송의 제기를 그 만큼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집단소송은 가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환경소송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소송은 전통적인 민사소송의 목적인 주관적 권리보호 이외에도 집단이익이나 공익을 강력하게 실현하는 사회적 권리보장절차의 성격을 띠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집단소송의 도입여부는 사회·경제·정책적인 관점과 법이론적인 관점의 양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비자 내지 환경보호 및 기업윤리의 확립과 이를 위한 비용증가에 의한 기업도산 및 그로 인한 실업자증가 문제와의 형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이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권리보장절차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 고 볼 때 이 제도의 도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본토양으로서 시민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후술과 같이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그 허가단계가 비송절차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히 법관의 재량판단이 많이 요구되므로 가해자측이나 다수피해자가 그 판단에 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관의 노련한 재량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은 법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확립된 토양 속에서

사회·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비교형량의 전제 문제의 충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단소송을 단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소비자보호법 또는 환경보호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점에 관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이, 개별분야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무부시안과 같이 집단소송법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지에 관하여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가 마련한 시안(이하 '시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송비용부담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소송의 제기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청구나 확인청구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액이 고액인 경우 인지대금으로 인하여 대표당사자가 단독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납입해야 할 인지액을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인지액을 일반민사소송상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게 될 때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제기를 불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이를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에게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게 되면 집단소송의 소제기가 소송비용부담면에서 용이해져 기업에 대한 보복 등의 특수한 목적에 의한 남소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발표자께서는 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이 점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남소방지 를 위하여는 법원의 엄격한 후견적 감독이 필요한데 과다한 업무부담 속에서 법관이 집단소송의 허가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비송적인 재량판단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집단소송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하여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변호사보수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안에서는 집단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시안 제5조), 이 경우에 변호사보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보수제가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청구금액이 많아야 변호사보수도 증가하게 되므로 집단소송시 변호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피해자들의 집단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집단소송제기의 남용이 우려됩니다.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사보수의 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지 이 점에 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집단소송에서 금전배상을 명한 경우에 배상액 중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개개의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특히 소액다수피해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배당부분을 대부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분배가능금액의 상당 부분이 남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금액을 다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시안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집단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잔여금이 있게 되면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시안 제57조), 집단소송의 성격을 집단이익이나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권리보장절차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반드시 손해전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의 분배절차에서 그 잔여금의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 점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분배잔여금의 국고귀속만을 규정한 시안의 규정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년(사회) : 집단소송제도의 입법정책적인 문제, 법리상 문제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호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이건호 : 저는 '법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구체적·실무적인 문제점을 지적·보충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견은 과거에 1990. 12.부터 약 5년 반 동안에 걸쳐 법학계·법조계 등의 12인으로 구성된 법무부『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성안하였으나 아직 입법화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집단소송법시안』의 기초에 참여하였던 위원의 사람으로서, 동『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했던 소견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위 법무부의『집단소송법시안』이외에, 최근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가 2000. 10. 11. 국회의원 3인의 소개로 입법청원을 한『집단소송법안』과 '참여연대'가 2000. 10. 16. 국회의원 28인의 소개로 입법청원을 한『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이 나와 있고, 이 두 개의 청원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대상 분쟁의 범위를 달리하는 점 이외에는 대동소이하며, 주제발표에서는 위『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집단소송법안』은 위 법무부의『집단소송법시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인간에,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에 관한 '법안'은 그 성격이 민사소송관련특별법이며, 거기서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특례를 정하려 하는 문제의 분야는 대체로 ① 집단소송의 적용대상분쟁의 범위, ② 제소요건과 절차, ③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④ 소송비용, ⑤ 재판절차, ⑥ 판결의 효력 범위, ⑦ 분배절차, ⑧ 업무수행관계자의 민사적·형사적 책임 등 여덟 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는 기존의 우리 민사소송체계의 기본적 논리·골격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창출하려는 부분도 있어서, 경험의 축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소한 제도가 실제 운영될 경우에 그 합헌성·실효성·합리성 등에 문제가 없을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용된 시간이 15분 이내이므로 주제발표에서 다른 법안인『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항목별로 요약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소송의 적용대상분쟁의 범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집단소송의 적용대상분쟁을 "다수인의 집단적 분쟁"이라고 하고, 이 집단적 분쟁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다수인”이라거나, “피해발생 우려”라거나 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둘째, 집단소송 대상분쟁이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청구 이외에 작위 또는 부작위청구나 확인청구 등도 포괄적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집단소송의 특례설정이 어디까지나 예외의 설정인 것이므로 그 대상분쟁의 유형을 명백히 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열거함으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총원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와 판결서에 기재하라고 한 “총원의 범위”라는 개념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 전원”이라고 하였으나, 집단소송도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절차인 이상, 소송물인 권리와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오해나 혼란, 오용 또는 악용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단소송에도 당사자처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때에 “직권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법안 제14조제2항을 “소송허가결정에 앞서 총원의 범위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허용 여부입니다.

‘법안’ 제14조제1항에 의한 수소법원의 집단소송허가결정은 이를 상대방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 알리도록 하여야 공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송허가결정의 ‘총원’에게 대한 고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17조가 정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제도의 이상과 목적은 집단의 구성원전원에게 그 결정을 빠짐없이 알리려는 데에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방법으로 “일간신문게재, 개별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그 고지방법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법선택에 관한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생각할 때 고지제도의 본래 목적달성을 미흡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대하

여 하는 고지방법의 수준에도 미달합니다. 우리의 현실성에 비추어 수 회 이상의 TV광고, 일간신문에의 수 회 이상의 게재를 필요로 고지방법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보충적으로 알고 있는 총원의 구성원에게 개별적 송달을 하도록 하는 등 자세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 제4조는 집단소송의 사물관할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집단소송의 총원구성원이 전국에 걸쳐 산재할 수 있는 특성, 증거자료의 조사편의, 소송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관할도 “피고의 본점주소지 관할법원”, “피고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관할법원”, “피고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다수의 피고 또는 1인의 피고의 본점주소지나 주된 영업소 관할법원” 등으로 전속시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토지관할을 한정할 경우에 ‘법안’ 제13조의 이른바 “경합 사건”的 문제도 상당수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소송에서도 당연히 소송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인지법에 규정된 첨부인지, 민사소송비용법이 열거하는 서기료 등과 증인·감정인 등의 일당·여비, 통신비, 공고비, 송달료, 집행비용, 법원의 출장비, 변호사보수·기타 일체의 소요 실비이며, 그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액과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서 확정해 주는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첫째, ‘법안’ 제15조제1항은 법원이 소송허가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의 고지비용과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예납을 명하는 소송비용에 소장에 첨부할 민사소송인지액, 송달료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첨부인지와 송달료는 소송허가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 위 첨부인지대, 송달료, 변호사강제에 의한 변호사보수, 예납금액명령된 소송비용과 허가결정고지비용, 그 후의 추가예납명령액, 기타 실제소요된 비용 일체를 선부담·후추심의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소송구조에서

이를 실제로 선부담한 사람에 대한 배려(부담자, 그 이자 등)가 '법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 당해 소송의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거나,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에 소요된 패소당사자가 부담지급한 소송비용과 재판에서 부담을 명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법안'에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총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그 소송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도 실제로 대두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용과 실제로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정산받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고려도 법안에는 없습니다. '법안' 제46조는 일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재판에서 확정해 준 비용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금전·물건의 급부청구가 아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예컨대 작위 또는 부작위청구 또는 확인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받는 "권리실행금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분배절차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안' 제46조에 의한 분배제외의 방식으로 그 소송비용을 받을 여지가 없는 바, 그 경우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용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차액 또는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금액 등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 또는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법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소송비용이 소송물가액보다 적을 경우에, '법안' 제47조제1항은 권리실행금액의 '불분배'를 규정하는 바, 이러한 실정의 집단소송은 아예 소송불허가의 요건으로 정하여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이익' 내지 '경제성'에 비추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청구원인)·입증책임의 경감에 관한 문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28조는 원고 측이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없음"을 이유로 추상적인 청구원인을 내세워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컨대 증권투자손실을 보았다는 투자자집단이 그 손실이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이상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의 구체적 사실"은 이를 원고 측이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한 집단소송이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개략적' 주장이라고 해서 허용하는 경우의 남소의 우려나 또는 경고 또는 비법률적 목적에 집단소송제도가 이용될 우려는 없을 것인지, 그러한 '개략적' 주장이 권리발생요건사실에 대한 구체적 주장으로서 소송상 청구원인 내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개략적'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무부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줄거리로 된 '법안' 제28조제2항 이하의 구상이 당사자변론주의를 기초로 한 민사소송의 본질적 구조와 체제에 맞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소송에서의 원고 측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를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깊이 생각하여 재조정하고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집단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의 문제입니다.

'법안' 제38조를 보면 집단소송판결이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이와 같이 확장하는 논거를 '제외신고의 기회부여'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외신고기회의 부여는 모든 구성원에게 집단소송제기사실을 고지하였을 것과 이 고지를 받은 모든 구성원이 명

시적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을 경우를 전제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임이 논리상 당연한 바, 우리의 실정에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의제하는 것이 옳겠는지도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라면,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에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총원에 포함되는 구성원전원에게 미치게 되어, 실제로 그 소송의 제기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대신한 소송으로 인하여 자기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확정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도 얼마든지 초래되는 정서적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집단소송제의 구상이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에서는 '집단피해가 있다'는 주장은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하여 나온 일면의 결함이 없지 않다고 한다면, 위의 정서적 문제를 바로 이러한 결함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 가는 것이 과연 옳을지 의문입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법안'과 같이 확장하기 위한 전제적 절차 내지 소송구조를 갖추도록 전문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안'이 예정한 분배절차의 골격은 법원의 감독·관리 하에 '분배관리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 첫째, 분배대상 구성원의 권리확인과 분배를 분배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의 문제, 둘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분배관리인의 확인과정에서의 자의성 배제와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절차·과정·기준의 설정에 관한 문제, 셋째, 분배확인을 분배감독 법원에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만으로서 하도록 하면서, 동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과연 권리확정의 방법으로서 옳은 것인지의 문제, 넷째, 권리확인 및 분배에 관한 구성원상호간의 집단적 또는 개별적 견제와 부인의 허용 여부 및 절차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칙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법안'이 정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외에 피고와의 담합제소 또는 담합소송, 분배관리인의 분배재산 유용, 권리확인 또는 분배과정에서의 분배관리인의 고의적 배임행위, 기타 집단소송의 본

질적 목적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차분하게 따져서 유형화시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 김광년(사회) : 입법청원된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다년간의 실무에 바탕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YMCA의 신종원 실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신종원 : 저는 지난 15년 가까이를 주로 소비자피해구제 혹은 그와 관련된 법률소송구조활동에 YMCA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분들과 함께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조문검토 관점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나 판단과 관련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으니,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말씀 중 집단소송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일면 수긍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내용들이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사법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사법 참여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참심제와 배심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일본의 사법개혁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법개혁위원회의 특징은, 구성 자체가 법조인력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법조인력은 참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력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법조와 비법조와의 대립문제라기 보다 도 사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사법의 출발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나 기본법체계의 유지·발전이라기 보다도 시민 혹은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 법률가의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우리의 사법현실에 대한 고려 또는 비교형량의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하고 진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출발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시민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또는 현대 산업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법체계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는, 특히 손해의 전보 혹은 피해의 구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불구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법체계는 대개 소위 사인간의 거래 혹은 개인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소위 산업사회, 특히 대량생산과 대량공급, 대량소비를 이미 지나서 이제는 디지털화까지 가는 현대 산업사회의 흐름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거래 혹은 공급(행정행위까지 포함한)은 다중을 상대로 하고 있고, 1인과 1인의 거래보다는 한 당사자가 수십만이나 수백만을 상대로 하는 공급계약, 거래 등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조건에 일반 시민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법제도는 이런 오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소비자운동에 종사하면서, 일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소위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한, 일종의 공동소송이 되겠습니다만, 집단소송을

10여 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도입의 필요성이 아니라 도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남용이나 시기상조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아무리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도입해 보지 않은 제도 또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완벽한 판단을 가진 입법이나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나 일반 시민의 측면에서 집단소송을 체감했던 계기는 소위 백화점의 사기세일사건이었습니다. 나중 대법원판결까지 갔던 이 사건은, 일부 몇몇 소송에 응하고자 하였던 소비자들을 모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화점들은 시가 50만원 가량의 옷에 정가는 100만원으로 붙여놓고, 50% 할인이라고 해서 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아마 물적 피해를 계량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속았고, 백화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만, 결국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겪었던 다수소비자들에 대한 사후적인 손해의 전보는 사실상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소액의 다중의 피해와 그에 대한 구제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 혹은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초 IMF 직후에 주택할부금융에 따른 금리의 일방적 인상을 고발하는 약 10만 명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96년 이후 우리 나라의 주택공급이 확대되었으나, 경제가 침체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위축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할부금융제도를 만들었고, 약 20여 개의 할부금융사들이 생겼습니다. 이 할부금융사들은 해외에서 약 6%의 이율로 단기자금을 쉽게 확보하여 13.5%의 3년 고정금리계약으로 소비자들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하였습니다. 약 10만 명이 대출원금 약 3조원을 대출받아 실제 우리 나라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7년 말에 IMF가 터졌고, 98년 초부터 약 20여 개의 할부금융사들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할부금융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단기 6% 자금이 끊어졌고, 약 30%까지 조달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할부금융사들은 3년 간 고정금리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이율을 약 20% 내지 26%로 올리기로 통보하였고, 만일 원치 않으면 이미 공급된 대출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자들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부터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무했었습니다. 평균 3, 4천만원 정도 대출받았는데, 4,000만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개 월 5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자가 갑자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뛰게 된 것입니다. IMF 상황에서 가계는 크게 어려워졌는데 이자부담은 배 가까이 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피해에 대한 구제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여 저희가 소송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몇몇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일종의 시범소송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부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을 소위 천재지변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기업이 계약의 안정성을 깨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석과 판단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로는 1인당 피해액이 한 달에 이자 몇십만원, 몇 달간 손해액이 많아야 몇백만원이 되는 전국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소위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응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판단이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다투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다투는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부득이 몇몇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물론 승소는 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기업행위를 교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대법원판결이 있더라도 소송에 이

르지 않은 대다수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만명의 피해자 중 몇 명이나 소송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기업의 판단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우리 사법제도의 불구성을 옹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큰 비용을 초래했고, 99.9%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국 소송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은 피해자들과의 타협을 시도하였고, 약 2~30%를 되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을 때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고생해서 소송하는 것보다는 몇 푼이라도 견지자는 심정으로 응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불구성은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없이,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 속에서 사회적 형평 혹은 정의를 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지금 그 필요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전 사회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랫동안 기업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상담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소비자보호법에 있었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 규정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강제규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일면 이런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자기결정권 또는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 시장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기책임에 대한 신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시장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시민 또는 소비자들의 대응수단을 균형적으로 구비해 주는 것이 시민사회에 필연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의 기업, 정부와 같은 공공영역에서의 행위주체들은 시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이행이나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 공급자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일방적인 선택으로 빚어지는 과오나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얻는 이익과, 시민과 소비자 등 개인이 그 행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이에 대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서로 극단적인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수단이 집단소송제도이고 이 제도의 도입은 대단히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는 과정에 이미 많은 시민들의 삶이 왜곡되고 피해가 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발표자의 발제내용과 토론자들의 문제제기와 토론내용에 대해 경청하고 현재 기존의 우리 사법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출발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기존의 사법체계와의 조화에 있나 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대단히 많이 변해서 지금의 사법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보완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우선과제로 놓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오남용에 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오남용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토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제도 이전에 제조물책임법소송에 관해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본도 제조물책임법이 96년에 도입된 이후 첫해에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소송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의깊게 들여다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사법부의 부담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소송허가과정에서의 법관의 재량 혹은 판단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남용이나 사법부의 부담 등 부분적인 논점들이 집단

소송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광년(사회) : 시민단체의 하나인 서울YMCA에서 중추적·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신종원 실장님께서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입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의원님의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 이종걸 : 민주당은 소비자인권의 보호와 다수의 작은 권리 찾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의 예로 104인의 민주당의원들이 1999년 11월 정기국회에서 1982년 최초로 발의된 이후 거의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제조물책임법을 공동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습니다(다만, 경과 규정으로 2002년 7월을 효력발생시기로 하고 있음).

민주당이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 시장기능의 회복, 생산적 복지에 집단소송제도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총론적으로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16대 총선거 기간 중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하고 공급, 소비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負)의 효과들, 예컨대 제조물하자로 인한 피해, 환경피해 등의 총량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피해자별로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제도 등 집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이 떠 안을 공산이 큽니다. 이는 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측면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비용과 가치구조가 왜곡되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란 이후 가장 긴급한 과제로 등장했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기업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실효성은

구체적으로 집단소송제도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98년 상법개정 때 도입된 집중투표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결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제기했다가, 그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구제하고 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필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측에서도 도입원칙을 정하고 재경부와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정한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우리 기업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집단소송제도로서 현재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class action)와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제도 모두는 장단점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각 단점은 연혁적으로 내려온 특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개별소송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근대 민사소송제도인 기존제도에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는 등 소송제도 본래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단점이 많은 집단소송제를 우리 민사·행정소송에 연착륙시키기 위하여는 도입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제도 자체로서는 단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예와 우리 나라 현실의 비교 검토, 그리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실행했을 때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우리는 의약분업제도 실행에서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나라의 법제도와 그 운영관습이 비슷한 일본이 수십 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입법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시안(이하 “시안”이라고 약칭한다)은 미국, 독일의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한 후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두 제도를 평면적으로 결합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 제6조는 소송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을 기대하며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두 제도의 단점을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법에서 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방적 권리구제절차로서 금지청구(예컨대 약관의 사용중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를 집단소송의 원칙적 허용범위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이 있는 정도인데, 시안은 제35조 단 한 조문으로 일반적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청구까지 허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그 책임 여부와 수액산정, 분배 중 1) 전 2자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통합방식, 2) 책임유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허용하는 분리방식, 3) 집단개개인에게 분배될 금액까지 미리 판단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유동적 집단보상제(Fluid class recovery) 등 다양한 손해배상 실험제도를 갖추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허용할 때 시안 제38조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원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특히 집단 측이 패소하였을 때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집단 측의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일 수 있고, 더구나 소송물의 양도나 임의적 소송신탁절차 없이 한 단체소송의 경우 집단 당사자들에게 기판력이 미치게 한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소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후견적 작용으로서 허가는 당사자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허가 요건에서도 시안 제11조는 1) 상당한 다수성, 2) 법률상·사실상 쟁점공통성, 3) 수단적합성 요건을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요시하고 있으며, 위 쟁점공통성요건을 더 강화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대표당사자와 집단당사자간의 청구동일성을 요하는 전형성(typicality)요건을 왜 빼버렸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을 밝히는 본 의원은 일반적인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기 전에 집단소송제도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되어 온, 예컨대 담배피해 등 실제 사례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도를 적용, 빈틈 없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시범제도 실시 외에 비교적 조기 입법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서 규정하여 이를 먼저 시행하는 시범제도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추가비용 등 기업 측의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데 비하여 증권분야는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합리적인 기업경영에 필요한 제도로서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되어 2002년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시행 이전에 선택가능한 여러 집단소송제도 시뮬레이션과 시범제도 실시를 해 본 후 일반적인 집단소송법을 입법하여도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김광년(사회) : 이종걸 의원께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강조하시면서, 역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용철 변호사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용철 : 저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했던 토론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총론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각론적인 부분에서 신중하고 잘 준비된 법안마련이 되

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논의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중한 준비가 이 제도를 한 없이 뒤로 미루는 명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선 이 제도의 도입에 최대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각론적으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요건을 매우 명료하게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벤치마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앞서 이종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 적용되어질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는 시뮬레이션이 된 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들을 하긴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안과 대동소이하게 안을 내놓게 된 것은 오늘 토론하신 변호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사실 법무부안을 마련할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그 문제 지적을 그 당시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안이 그렇게 나왔을까, 거기에는 요건을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갖는 원천적인 어려움이 반영되어서 법원의 비송적인 재량판단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의도가 현재상태에서는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비송적 재량에 넘기지 않아도 될 만한 요건들, 좀더 명료하게 해야 할 각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2002년 7월 이전까지는 집단소송법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한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라기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그것이 시범적인 집단

소송의 경험으로 되면 아주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케줄대로 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도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남근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5년 등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기한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단소송에 있어서 가장 필요성이 큰 분야가, 하나의 분야만 이야기 하자면, 소비자분야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것입니다. 증권거래에 있어서 주주나 투자자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액의 흘어진 다수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집단소송 본래의 취지에서 비추어보면 사실은 필요성이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이 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액도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역으로 말하면 집단소송을 운용하기에 있어서의 편리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흘어져 있고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방기되어지는 사회적 권리 를 보호한다고 하는 집단소송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사실은 많이 필요성이 약한 면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부문에서 집단소송제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필요를 다 소화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대표단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아주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집단소송이 필요한 두 부문 즉, 손해전보와 금지청구 중 대표단체의 필요성 문제는 금지청구와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저희들 내부에서도 금지청구와 관련된 원고 적격의 확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대표단체 문제는 개별법들, 예컨대 환경 정책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부분에서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시안에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적당히 조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별법으로 소화시킬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입법정책상의 어려움 등을 편하게 일괄처리 하는 느낌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이 두 제도를 하나의 법안에서 결합시키는 방식이 완전히 불가능할까 하는 기대

를 가지고 법무부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기되어지는 많은 토론들을 보면 이 두 개를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생기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개별법에서 소화시키는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토론해 봐야 할 성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손해전보형의 대표당사자를 통한 집단소송은 개별법 형식보다는 단행법형식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문제와 관련해서 윤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익적 청구에 대한 국고체당에 대해 반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신종원 부장이 토론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집단소송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표당사자가 사회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어쩌면 투사나 다를바 없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중한 비용까지를 다 짊어지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컨대 정보통신요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몇백원, 몇천원 수준의 요금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그 부당한 피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액수인 소송의 경우 모두다 개인적으로는 귀찮아서 아무리 설득해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임승차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구제코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 보장 절차적 성격이라고 볼 때 실제로는 공익소송과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익적 청구라고 보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국고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에 관해서도 법원의 재량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사익청구인 것은 틀림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공익적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보수제한문제에 관해서는, 법안에서는 5%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

도 몇 %에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 노력 없이 집단소송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소의 우려, 그리고 변호사가 역으로 원고집단을 모집하면서 매우 영리적 행태로 집단소송을 끌고 가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법과 관련해서는, 공시송달제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지나 공시가 매우 형해화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이 현실이고, 원칙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고지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비용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철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분배절차, 별칙을 보완하자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 김광년(사회) :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용철 변호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에 참가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1996년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집단소송법시안

集團訴訟法 試案

目 錄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共通의 利益을 가진 多數人에게 被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多數人을 위하여 그중의 1人 또는 數人이나 法令이 정하는 團體가 그 多數人の 明示的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當事者가 되어 被害에 대한 原狀回復·損害填補, 加害行為의 中止·豫防, 違法의 確認, 義務履行 등을 구하는 訴訟을 提起하여 遂行함으로써 多數人の 集團的 紛爭을 效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民事訴訟法 및 行政訴訟法의 特則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總員이라 함은 共通의 利益을 가진 多數人 全員을 말한다.
2. 構成員이라 함은 總員을 構成하는 者를 말한다.
3. 代表當事者라 함은 總員을 위하여 訴의 提起 기타 이 法에 의한 節次를 遂行하는 1人 또는 數人の 構成員을 말한다.
4. 代表團體라 함은 總員을 위하여 訴의 提起 기타 이 法에 의한 節次를 遂行하는 法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代表者라 함은 代表團體를 代表하는 자를 말한다.
6. 集團訴訟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訴訟을 말한다.

第3條(法適用例) ①集團訴訟에 관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또는 行政訴訟法에 의한다.

②訴提起에 앞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前審節次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集團訴訟을 提起하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4條(管轄) 集團訴訟의 '管轄法院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또는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民事訴訟이 提起되는 경우에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의 專屬 管轄로 한다.

第5條(訴訟代理人) 이 法에 의한 節次를 遵行함에 있어서는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代表當事者나 代表者에게 辯護士 資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章 訴의 提起 및 許可節次

第6條(訴의 提起 및 許可申請) ①集團訴訟을 提起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는 이 法이 定하는 方式에 의한 訴狀과 訴訟許可申請書(이하 "許可申請書"라 한다)를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集團訴訟의 提起時 納入하여야 할 印紙額은 地方法院 合議部의 審判範圍로서 정하고 있는 訴訟目的의 價額의 基準額에 民事訴訟等印紙法 第2條第1項, 第2項에 따라 算出된 金額으로 한다.

第7條(訴狀記載 事項의 特則) 訴狀에는 原告의 訴訟代理人 및 總員의 範圍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8條(許可申請書의 記載事項) 許可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當事者, 法定代理人, 訴訟代理人

2. 總員의 範圍

3. 代表當事者の 經歷, 代表團體의 人的構成 및 活動實績, 訴訟代理人의 經歷. 다만 第10條第2號의 韓國消費者保護院, 大韓法律救助公團其他 法律이나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그 人的構成 및 活動實績의 記載를 壴하지 아니한다.

4. 許可申請의 趣旨와 原因

第9條(法院의 許可) 法院은 이 法에서 定하고 있는 要件을 갖추고 있는 代表當事者, 代表團體, 訴訟代理人 및 訴訟事件에 限하여 集團訴訟을 許可한다.

第10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 및 訴訟代理人에 대한 許可要件)

集團訴訟을 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와 그 訴訟代理人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여야 한다.

1. 代表當事者は 總員의 利益을 公正하고 適切히 代表할 수 있는 構成員일 것

2. 代表團體는 韓國消費者保護院, 大韓法律救助公團 other 法律이나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다음 각목의 要件을 갖춘 團體일 것

가. 定款에 의하여 常時的으로 消費者保護, 環境保護 other 이에 基準하는 公益의 追求를 主된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法人일 것

나. 法人的 地域的 活動範圍가 1個以上의 特別市, 廣域市, 道 全域에 걸칠 것.

다. 法人的 人的 構成 및 活動實績으로 보아 客觀的으로 消費者保護, 環境保護 其他 이에 準하는 公益을 追求하는 任務를 適切히遂行할 수 있을 것

라. 法人的 目的을 支持하는 모든 者에게 加入이 開放되어 있을 것

3.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訴訟代理人은 總員의 利益을 公正하고 適切히 代理할 수 있는 者일 것

第11條(訴訟事件에 대한 許可要件) 訴訟사건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1. 構成員이 相當한 多數일 것
2. 構成員의 각 請求가 法律上 또는 事實上 主要한 爭點을 共通으로 할 것
3. 集團訴訟이 總員의 權利實現이나 利益保護에 適合하고 效率的인 手段일 것

第12條(許可節次) ①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許可申請의 原因을 疏明하여야 한다.

- ②集團訴訟의 許否裁判은 當事者를 審問하여 決定으로 한다.
- ③法院은 第2項의 裁判을 함에 있어서 職權으로 필요한 調查를 할 수 있다.

第13條(競合許可申請의 處理) ①수개의 集團訴訟의 許可申請이 同一法院에 제기된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併合審理하여야 한다.

②수개의 集團訴訟의 許可申請이 각각 다른 法院에 제기된 경우에는 關係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關係法院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管轄法院을 정한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第14條(許可決定) ①集團訴訟의 許可決定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決定을 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第8條第1號,第2號의 記載事項
2. 主文
3. 理由
4. 構成員이 除外申告를 할 수 있는 期間
5.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費用에 관한 事項
6. 法院

②法院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總員의 範圍, 請求의 種類를 調整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15條(訴訟費用) ①法院은 集團訴訟의 許可決定에서 告知費用 기타 訴訟費用의 豫納을 명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事件의 大小,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資力 기타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訴訟費用의 豫納을 猶豫하고 國庫金으로 替當할 수 있다.

③第2項에 의하여 猶豫된 訴訟費用은 그 負擔의 裁判을 받은 相對方으로부터 직접 推尋할 수 있다. 이 경우 民事訴訟法 第1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訴訟費用의 負擔의 裁判을 받은 경우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第2項에 의하여 猶豫된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給을 免除할 수 있다.

第16條(不許可決定) ①原告는 集團訴訟의 不許可決定에 대하여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集團訴訟은 不許可決定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終了된 것으로 본다.

③構成員의 請求에 대한 時效中斷의 效力은 不許可決定이 確定된 날부터 6月以內에 그 請求에 관하여 訴가 提起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消滅한다.

第17條(許可決定의 告知事項) 法院은 集團訴訟의 許可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遷滯없이 다음 事項을 告知하여야 한다.

1. 當事者·法定代理人·訴訟代理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와 住所
2. 總員의 範圍
3. 請求趣旨 및 原因의 要旨
4. 除外申告의 期間과 方法
5. 除外申告을 한 者는 個別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것
6. 除外申告을 하지 않은 構成員에 대하여 判決 등의 效力이 미치고法院의 許可를 얻어 共同代表當事者로 參加할 수 있다는 것
7. 기타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18條(告知方式) 第17條에 記載된 事項의 告知는 法院이 日刊新聞掲載, 個別通知等 可能한 한 構成員 모두에게 周知시킬 수 있는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第19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複數인 경우의 訴訟遂行)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複數인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63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構成員등의 訴訟關與) ①構成員 또는 第10條第2號에 規定된 團體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共同代表當事者 또는 共同代表團體가 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否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第12條 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許否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第21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에 대한 訴訟遂行許可의 取消) ①法院은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總員의 利益을 適切히 代表하고 있지 못하거나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職權 또는 다른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의 申請에 의하여 그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에 대한 訴訟遂行의 許可를 決定으로 取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第12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取消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22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辭任)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第23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一部變更)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一部가 死亡, 解散, 辭任하거나 訴訟遂行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殘存하는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訴訟을 遂行한다.

第24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全部變更) ①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의 全部가 死亡, 解散, 辭任하거나 訴訟遂行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訴訟節次는 中斷된다.

②第1項의 경우에 代表當事者가 되고자 하는 構成員 또는 代表團體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許可를 받아 中斷된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中斷후 1年內에 受繼申請이 없는 때에는 集團訴訟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第25條(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 變更의 告知) 法院은 第20條 내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變更된 경우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告知를 할 수 있다.

第26條(訴訟代理人의 辭任등) ①訴訟代理人은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辭任할 수 있다.

②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

③訴訟代理人의 一部가 死亡 또는 辭任하거나 解任된 때에는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④訴訟代理人의 全員이 死亡 또는 辭任하거나 解任된 때에는 訴訟節

次는 中斷된다. 이 경우에는 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訴訟代理人을 選任하여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경우에는 第24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總員範圍의 變更) ①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總員範圍를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法院은 第1項의 變更決定으로 構成員에서 除外되는 者와 새로이 構成員이 된 者에게 그 變更의 內容을 告知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는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8條(除外申告) ①構成員은 除外申告 期間內에 書面으로 法院에 除外申告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期間前이나 期間內에 集團 訴訟의 目的으로 된 權利와 同一한 權利에 대하여 個別訴訟을 提起한 者는 第1項의 除外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期間內에 訴를 取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경우에 被告는 個別訴訟이 提起된 事實을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第1項 및 第2項의 除外事實을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9條(主張·答辯의 特則) ①當事者는 請求原因事實에 관하여 스스로 調查하여 밝힐 수 있는 限度內에서 概略的으로 主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相對方은 具體的으로 答辯·解明하여야 한다.

第30條(釋明等의 特則) ①相對方이 第29條第2項에 의한 答辯·解明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答辯·解明이 不充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126條, 第127條, 第1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相對方이 第1項의 釋明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法院은 釋明을 구한 事實에 관한 當事者の 主張을 真實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이 위 釋明 등에 응할 수 없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職權證據調查등의 特則)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が 主張하지 아니한 事實에 대하여도 判斷할 수 있다.

第32條(當事者訊問의 特則)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者 本人을 訊問할 수 있다. 이 경우 當事者 本人에는 構成員도 包含된다.

第33條(文書提出命令등의 特則) ①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訴訟과 관련있는 文書의 所持者에 대하여 그 文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文書의 送付를 嘱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文書提出命令이나 文書送付嘱託을 받은 者는 正當한 理

由 없이 그 提出이나 送付를 拒否할 수 없다.

③當事者가 第1項의 文書提出命令등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그 文書의 表示·趣旨 및 證明할 事實은 概括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第34條(檢證·鑑定의 特則) ①法院은 特定한 目的物에 대한 檢證 또는 鑑定을 함에 있어 그 目的物을 所持·管理하는 者에게 미리 그 뜻을 通知하고 그 目的物의 現狀을 保全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當事者가 正當한 理由 없이 第1項의 命令에 違反하여 檢證 또는 鑑定을 妨害한 경우에는 檢證 또는 鑑定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真實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第35條(證據保全의 特則) 法院은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없는 경우에도 人的·物的 狀態의 確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集團訴訟을 提起하고자 하는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 또는 當事者の 申請에 의하여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第36條(損害賠償額의 算定) 法院은 證據調査의 結果에 의하여도 正確한 損害額의 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標本的·平均的統計的 其他合理的 方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第37條(訴取下·和解·請求拋棄의 制限) ①集團訴訟에 있어서 訴의 取下, 訴訟上의 和解 또는 請求의 拋棄는 法院의 許可決定을 받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②法院은 第1項의 決定을 하기 前에 미리 期限을 定하여 構成員에게 意見을陳述할 機會를 附與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集團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法 第241條第2항,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8條(判決) ①判決에는 訴訟代理人, 總員의 範圍 및 除外申告를 한構成員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金錢支給의 判決을 宣告함에 있어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支給猶豫期間을 許與할 수 있고, 分割支給 其他相當한 方法에 의한 支給을 命할 수 있다.

③法院은 判決의 主文과 理由의 要旨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第39條(既判力) 確定判決은 除外申告를 하지 아니한構成員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第40條(再審)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의 任職員 및 그 訴訟代理人이被告와 共謀하여 訴訟의 目的인構成員들의 權利를 託害할目的으로判決을 하게 한 때에는構成員은 確定된 終局判決에 대하여 集團訴訟의 方法으로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4章 分配節次

第41條(分配法院) 이 章에 規定하는 分配에 관한 法院의 處分, 監督, 協力 등은 第1審 受訴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第42條(權利의 實行) ①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債務名義를 取得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를 實行하여야 한다.

②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가 權利實行으로 金錢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③代表當事者 또는 代表團體는 權利實行이 終了된 때에는 그 結果를受訴法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43條(分配管理人) ①法院은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分配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分配管理人은 法院의 監督下에 權利實行으로 取得한 金錢 등의 分配業務를 行한다.

③法院은 分配管理人이 分配業務를 적절히 違行하지 못하거나 기타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代表當事者나 代表團體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分配管理人을 變更할 수 있다.

第44條(分配計劃案의 作成) 分配管理人은 法院이 定한 期間內에 分配計劃案을 作成하여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5條(分配計劃案의 記載事項) 金錢의 分配計劃案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分配 받을構成員의 範圍와 債權의 總額
- 債務名義 表示金額, 權利實行 金額 및 分配 할 金額
- 第47條第1項에 의한 控除項目과 그 金額
- 分配의 基準과 方法
- 權利申告期間, 申告場所 및 申告方法
- 權利確認方法

7. 分配金의 受領期間, 受領場所 및 受領方法

8. 其他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第46條(分配의 基準等) ①分配의 基準은 判決의 理由中의 判斷, 和解調書 또는 認諾調書의 記載內容에 의하여야 한다.

②分配 및 權利確認의 方法은 適正하고 簡易하게 定하여야 한다.

③申告期間內에 申告하여 確認된 債權의 總額이 分配할 金額을 超過하는 경우의 分配는 按分比例의 方法에 의한다.

第47條(分配除外 費用等) ①分配管理人은 權利實行한 金額에서 다음各號의 費用등의 支給 및 그 支給을 위한 替當金의 返還에 充當하는 金額을 控除할 수 있다.

1. 訴訟費用

2. 權利實行費用

3. 分配費用(分配管理人에 대하여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額數의 報酬를 包含한다)

②分配管理人은 分配計劃案의 認可前에 第1項第1號, 第2號의 費用을 支給하거나 替當金의 返還에 充當하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8條(費用不足의 特則) ①權利實行한 金額이 第47條 第1項 各號의 費用등을 支給하기에 不足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分配管理人の 申請에 의하여 分配하지 아니한다는趣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는 分配管理人은 權利實行한 金額을 法院의 許可를 받아 第47條第1項各號의 費用등에 적절한 方法으로 配定하여야 한다.

第49條(分配計劃案의 認可) ①法院은 分配計劃案이 法令에 定한 要件을 充足하고, 公正하며 衡平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決定으로 認可한다.

②法院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分配計劃案을 修正하여 認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미리 分配管理人을 詮問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第50條(分配計劃의 公告) ①法院이 分配計劃案을 認可한 때에는 아래事項과 함께 認可한 要旨 및 權利申告를 할 수 있다는 趣旨를 告知하여야 한다.

1. 債務名義의 要旨

2. 分配管理人的 姓名과 住所

3. 第47條第1項各號 事項의 要旨

②第1項의 告知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分配計劃의 變更) ①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職權 또는 分配管理人の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分配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③分配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變更의 內容을 告知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告知에 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2條(權利의 申告와 確認) ①構成員은 分配管理人에 대하여 分配計

劃에 따라 權利申告期間內에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構成員은 그 責任을 질 수 없는 事由로 權利申告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事由가 끝난 후 1月內에 한하여 그 申告의 追完을 할 수 있다.

③分配管理人은 申告된 權利를 確認하여야 한다.

④分配管理人은 權利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相當한 方法으로 權利確認의 結果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53條(權利確認에 관한 異議) ①權利申告를 한 者는 分配管理人の 權利確認에 異議가 있는 경우에 第52條의 確認結果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2週日內에 法院에 그 權利의 確認을 구하는 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第1項의 申請에 대하여 決定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第54條(殘餘金의 供託) 分配管理人은 分配金의 受領期間 經過後 殘餘金이 있는 경우에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第55條(分配報告書) ①分配管理人은 分配金의 受領期間 經過後 分配報告書를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分配報告書에는 權利申告를 한 者의 住所·姓名 및 申告金額, 權利가 確認된 者 및 確認金額, 分配받은 者 및 分配金額, 殘餘金과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分配報告書는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第59條의 期間이 經過할 때까지 法院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56條(受領期間 經過後의 支給) 權利가 確認된 構成員으로서 分配金의 受領期間內에 分配金을 受領하지 아니한 構成員 또는 申告期間의 經過後에 權利를 申告하여 權利를 確認받은 構成員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날부터 6月內에 한하여 供託金의 出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57條(分配終了報告書) ①分配管理人은 分配節次가 終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法院에 分配終了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分配終了報告書에는 分配金의 受領期間 經過後에 分配받은 者의 住所·姓名 및 分配金額, 分配金의 支給總額, 殘餘金의 處分과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第55條第3項의 規定은 分配終了報告書에 準用한다.

第58條(殘餘金의 處分) 分配終了報告書를 提出할 당시의 殘餘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第59條(分配管理人の 免責) 分配管理人の 責任은 分配終了報告書를 提出한 날부터 2年이 經過하면 消滅한다. 다만 分配管理人에게 不正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60條(權利의 實行으로 金錢이외의 物件을 取得한 경우의 分配) ①分配管理人은 權利의 實行으로 金錢이외의 物件을 取得한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換價하여 分配할 수 있다.

②金錢이외의 物件의 分配에 있어서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4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1條(追加分配) 分配終了報告書의 提出後에 새로이 權利實行이 可能

하게 된 경우에는 第4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罰 則

第62條(背任收財 등) ①代表當事者, 代表團體의 任·職員, 訴訟代理人 또는 分配管理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金品 또는 財產上의 利益을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揭記한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金品 또는 財產上의 利益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에 대하여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併科할 수 있다.

第63條(背任贈財 등) ①第62條의 金品 또는 財產上의 利益을 約束·供與한 者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行爲에 提供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받은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64條(沒收·追徵) 第62條 및 第63條의 경우에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3者가 取得한 金品 또는 財產上의 利益은 이를 没收한다. 이를 没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65條(過怠料) ①第3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1千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書提出命令 또는 文書送付囑託에 應하지 아니한 경우

2.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證·鑑定의 目的物의 現狀保全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경우

②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66條(監置命令) ①第6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制裁를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다시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의 命令 또는 囑託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30日의 範圍內에서 그 義務履行이 있을 때까지 監置에 處할 수 있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가 法人(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監置에 處한다.

③第1項에 의한 監置에 處하는 裁判節次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1999. 1. 1.부터 施行한다.